

수원지방법원 2022. 6. 21 선고 2020가단16897 판결 [사해행위취소 등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혜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현(담당변호사 최진용)

변 론 종 결 2022. 5. 24.

판 결 선 고 2022. 6. 21.

주 문

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. 12. 10. 체결된 증여계약을

81,272,63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81,272,636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

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사실의 인정

가. 원고는 2019. 3. 20. D와 원고가 D에게 이자율 연 24%, 변제기 2019. 5. 19.로 정하여 58,000,000원을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, C은 D의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다.

나. 원고는 D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부동산')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, 그 강제경매가 2019. 9. 16. 개시되었다. 원고는 2019. 10. 10.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였고, 2019. 10. 15. 개시결정이 말소되었다.

다. C은 2019. 12. 13.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2019. 12. 10.자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증여'). C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.

[근거] 다툼이 없거나, 갑 제1, 2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과 사해행위의 성립

원고가 C에 대해 가지는 채권(D에 대한 대여금에 관한 연대보증에 따른 채권)은 이 사건 증여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,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 그리고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이 사건 증여는 자신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이미 발생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.

3. 원고의 주장

D가 2019. 5. 24. 원고에게 변제한 5,000,000원을 반영하고, 이자제한법을 고려하여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연 20%로 적용하여 2021. 10. 8.까지 원금과 발생이자의 합계 81,272,636원(원금 58,000,000원의 2019. 3. 20.부터 2019. 5. 24.까지 미지급 이자 2,097,534원을 변제충당한 후 나머지 2,902,466원을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원금 55,097,534원과, 2019. 5. 25.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2021. 10. 8.까지 발생한 26,175,102원을 합한 금액이다.)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에게 가액배상으로 같은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다.

4. 피고의 항변

가. 선의의 수익자 항변

C은 원고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D에게 부탁하였고, D는 E을 물상보증인으로 내세워 그 소유인 부동산에 원고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.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취하하고,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. 피고는 원고에게 충분한 담보가 제공된 것으로 알고,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피고가 변제해 오고 있는 등의 사정으로 이 사건 증여를 받게 되었다.

나. 판단

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,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.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,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우 또는 동기,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,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(대법원 2016. 1. 28. 선고 2014다220132 판결).

피고가 채무자의 아들이고, 직전에 강제집행이 시작되었다가 취하된 적이 있으며, 무상의 증여계약이란 점 등 피고의 악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여럿 있다. 그러나 갑 제6, 7, 8호증, 을 제1 내지 9호증과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면,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대신 충분한 다른 담보를 제공받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확정적으로 철회한 것으로 믿고 그 취득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자신이 맡고 있었던 사정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증여받았고, 이 사건 증여가 C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. 그렇다면 이 사건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더라도,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.

① 원고는 2019. 10. 8. E 소유인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(이하 'E 부동산')에 관하여 채무자 D, 근저당권자 원고, 채권최고액 120,000,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, 그 이틀 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하하였다. 그 시간적인 간격이나, 담보금액 및 2019. 10. 4.자

설정계약에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D가 현재,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거래의 채무 등을 담보한다고 정하였고,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제외하면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같은 날 D의 22,000,000원 차용금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였을 뿐인 사정 등을 보면,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. 나아가 단순히 C, F 등의 봐달라는 요청으로 그냥 취하해 주었다는 원고의 설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.

② 실제로 원고는 2020. 9. 22. E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, 2020. 10. 13.경 원고의 근저당권에 앞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이 2억 3,500만 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, 그 때문에 경매가 취소되었다. 원고의 말에 따르더라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 D와 E이 마치 E의 아버지가 살고 있는 것처럼 원고를 속였다는 것이므로,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취하할 때는 E 부동산의 근저당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, 그 무렵 전후에야 그렇지 못하다는 사정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보인다.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가 이 사건 증여 당시 E 부동산의 근저당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 담보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.

③ 원고는 이 사건 증여가 강제집행 면탈을 위한 허위 양도라는 이유로 C, 피고를 고소하였는데, 2020. 12. 2. 다음과 같은 취지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. [C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의 소유 및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려 하였으나 대출한도 문제 때문에 형식상 C 단독 명의로 구입하였지만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대출금을 C 명의로 상환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피고이고, 결혼을 앞둔 피고가 소유권을 이전받으려 한 것으로, 1차 경매가 취소될 때 E 부동산의 근저당권이 제공되는 등으로 원고가 추가로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. 이 주장을 제출된 증거자료를 통해 확인하면, 이 사건 부동산이 C 명의로 되었지만 대출금 상환 등 실소유자는 피고로 확인되고, 피고의 결혼 예상 시기 및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판단되어 허위양도로 보기 어렵다. 또 원고가 1차 경매를 취소한 뒤 E 부동산에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황 등에 의해 C과 피고가 원고의 추가 강제집행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.]

판사 김연하

부동산의 표시

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

J아파트 K동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L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건 물 번 호 : M

구 조 : 철근콘크리트구조

면 적 : 59.88㎡

대지권의 표시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1.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I 대 75364.4㎡

대지권의 종류 : 1.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의 비율 : 75364.4분의 42.6706. 끝.

